보세구역 전달사항

* 본 사항은 업무의 편리, 신속성을 위한 연락용 메일로서 공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('24.10.18. 보세화물 특별점검팀)

- 1.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- 2. **자율관리보세구역**은 관련법령*에 따라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'식품등의 표시' 사항이 기재된 스티커('한글 지재 스티커') 작업은 보수 작업 신청(승인) 생략대상(자체 기록·관리)이나, 원산지와 관련된 작업의 경우는 보수작업 신청(승인) 필수대상입니다.
 - *「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7조(절차생략등) 제1항 제1호 가목 「식품위생법」제10조,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6조,「의료기기법」제20조 및「약사법」제56조,「화장품법」제10조 및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·제18조·제25조·제29조에 따른 표시작업(원산지표시 제외)과 벌크화물의 사일로(silo)적입을 위한 포장제거작업의 경우 법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 신청(승인) 생략
- 3. 이에, 보수작업 신청(승인)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- 아 래 -

〈보수작업 신청(승인) 필수대상〉

- ㅇ 물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원산지가 기재된 스티커 등 표시물로 「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표시작업을 하는 경우
- ㅇ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라 물품에 부착한 스티커 등 표시물에 기재된 원산지를 수정 변경하는 경우

〈보수작업 신청(승인) 위반시〉

- ㅇ「관세법」제158조(보수작업) 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* 처분
 - * 차수별 부과 : 1차-50만원, 2차-100만원, 3차-200만원, 4차이상-200만원
- ㅇ 위반사항 발생 보세구역 및 보세사 행정제재

부산세관 보세화물 특별점검팀 (문의: ☎051-620-6715~8)